

## 5. 租稅減免規制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財務部令 第1,983號 1994. 6. 15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10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⑨영 제75조 제9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법 제80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폐업
3. 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

업

4. 저축가입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②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2. 당초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 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일 것.
3. 당초 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일 것.

③영 제75조의2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29호의2 서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별지 제29호의2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④영 제75조의2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3 서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신설로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주택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 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주택은행외에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과 일부 특수은행을 추가함(제40조제9항).
- 나.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3월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등을 정함(제40조의2 제1항).
- 다.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20세이상이고 보험계약기간이 10년이상이며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만료일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함(제40조의2 제2항).

(재무부 제공)